

예천수도지사 단기계약근로자 채용 공고문

채용 개요

- ☐ 채용인원 : 기간제근로자 2명
- ☐ 근무기간 : 2021.06월 ~ 2021.11월 (6개월)
- ☐ 근무장소 : K-water 예천수도지사
- ☐ 근무형태 : 주 5일, 전일제(1일 8시간 근로)

급여 · 처우

- ☐ 보수수준 : 8,720원/시간 (성과급, 부가급여 등 별도)
 - * 기타 급여 사항은 기간제근로자 관련 공사 연봉기준 등에 의함
- ☐ 복지후생 : 4대보험 가입, 합숙소 지원 등
 - * 공사 복지후생 관련 규정에 의함

채용 기준

채용직무	인원	채 용 기 준
저수조 점검·검사 서비스	2명	▶ 학력, 연령, 성별, 전공, 자격은 무관 ▶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한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▶ 병역필, 면제자, 또는 비대상자 ▶ 채용예정일부터 현업 전일근무가 가능한 자

- ☐ 주요 수행업무
 - 저수조 위생점검 수행 및 공정운영 보조 등

결격 사유

□ 우리 공사 관리규정 상 아래 각호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만 채용이 가능함
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,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
-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자
-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,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하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
-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.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공사와 체결한 다른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자
- 외국인 또는 국외사무소 근무예정 내국인으로서 출입군관리 관계법령과 보안관계규정을 위반한 자

전형절차/방법

전형절차	선발 배수	평가방법(배점)								
1차 전형 (서류심사)	5배수	○ 자격(15%) :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- 수질환경기사, 수질환경산업기사, 환경기능사 등 (자격증 사본 증빙 필수), * 인정 자격증은 첨부1 참고 * 보유한 자격 중 최고 등급 1개만 인정 <table><tr><td>기사급 이상</td><td>산업 기사급</td><td>기능사급</td><td>자격증 미소지자</td></tr><tr><td>15점</td><td>10점</td><td>5점</td><td>0점</td></tr></table>	기사급 이상	산업 기사급	기능사급	자격증 미소지자	15점	10점	5점	0점
		기사급 이상	산업 기사급	기능사급	자격증 미소지자					
15점	10점	5점	0점							
		○ 경력(15%) :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- 수질검사 경력 2년 이상 환경부 지정 먹는물검사기관 및 수질분야 측정대행업 경력 또는 경력증명서 기준 ‘수질 검사, 수질 분석’ 단어가 명시된 경력만 인정 (경력증명서, 고용보험확인서 모두 증빙 필수) <table><tr><td>4년이상</td><td>3년이상</td><td>2년이상</td><td>2년미만</td></tr><tr><td>15점</td><td>10점</td><td>5점</td><td>0점</td></tr></table> ○ 우대사항 : 증빙서류에 따라 가산 - 법률상 가점 : 취업지원대상자(5%, 10%) - 특별 가점 : 장애인(5%) ○ 선발 : 서류·가점 합산 고득점 순 5배수 선발 *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포기시 차순위자 면접시행	4년이상	3년이상	2년이상	2년미만	15점	10점	5점	0점
4년이상	3년이상	2년이상	2년미만							
15점	10점	5점	0점							
2차 전형 (면접평가)	최종선발	○ 인성면접 : 40%, 실무면접 : 30% 실시 * 인성,실무면접 각 40% 이하는 과락 ○ 우대사항 : 증빙서류에 따라 가산 - 법률상 가점 : 취업지원대상자(5%, 10%) ○ 선발 : 서류·면접·가점 합산 고득점 순 최종 선발 * 최종합격자 채용포기시 차순위자 채용								

우대요건

구 분	가 점	제출서류
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▶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▶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▶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▶ 5.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▶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▶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	각 전형 단계별 점수 만점의 5 또는 10% (단,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.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제외)	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스캔본 첨부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※ 장애 정도 무관	1차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5%	장애인증명서 스캔본 첨부

* 법률상 가점의 세부내용은 국가보훈처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 3에 따름

** 관련 제출서류는 “지원서 접수” 안내 부분 반드시 확인

전형 일정 “여건에 따라 변동, 별도 통보예정”

구 분	일 자	내 용
○ 1차 전형 (서류심사) 발표	'21.04.30	○ 개별통보(인성검사 및 면접일정 통지)
○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	별도 통보	○ 미응시자는 면접포기 간주
○ 2차 전형 (면접평가) 실시	'21.05.10	○ 인성 및 실무면접 실시
○ 최종 합격자 발표	'21.05.15	○ 개별통보

지원서 접수

□ 접수 기간 : '21.04.19(월) ~ '21.04.28(수) 18:00까지(마감시간 엄수)

- ※ 입사지원시스템은 '21.04.19(월)부터 입력가능하며, '21.04.28(수), 18:00에 자동 종료됩니다. 입사지원 마감시간에 임박한 경우 다수 지원자 동시 접속으로 시스템이 불안정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연장하지 않으니, 사전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지원서를 최종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접수 마감일 전까지는 지원서 저장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. 다만 최종 제출한 후에는 지원서 수정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접수 방법 : K-water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한 지원서 제출만 접수

- K-water 입사지원시스템 : <https://k-water.recruiter.co.kr>
- 지원서 작성 시 직·간접적으로 본인의 출신 학교명, 가족 관계 등 편견이 개입되는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지원자 제출서류

- 자격기준 및 우대사항, 가점 등 합격결정과 관련있는 증빙서류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대상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·제출
(단순 사진촬영 및 캡처는 인정하지 않음)

- ① [경력]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 - * 해당 경력이 있는 경우, 입사지원시스템 지원서 제출시 경력기술서 작성 필수
- ② [경력]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,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,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중 1개 이상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- ③ [자격] 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
- ④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- ⑤ 장애인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- ⑥ 병적증명서(병역필자, 면제자)
- ⑦ 자기소개서(입사지원시스템 지원서 제출시 작성)

유의 사항

- ☐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며, 편견이 개입되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회에 제공되지 않습니다.
- ☐ 지원서 작성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, 신체검사 부적격, 신원조사 부적격, 기타 채용 자격요건 미구비자 등은 최종 합격여부에 관계없이 채용에서 제외됩니다.
 - *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하게 발급된 원본서류에 의해 증명되지 않은 사항은 허위로 간주
- ☐ 아래의 경우로 인한 불이익(불합격 등)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니 지원서 최종 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첨부 서류의 낮은 해상도, 문서 잘림 등의 사유로 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
 - 첨부 서류를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
 - 오타, 착오 등으로 지원서에 입력을 잘못된 경우
- ☐ 지원서 접수시 스캔하여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원본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14일 이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반환할 수 있습니다.
- ☐ 문의처 : K-water 예천수도지사 김성일 과장 (☎054-650-1211)

< 채용 청탁 금지 안내 >

- ◆ K-water는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한 채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본인 또는 관련자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,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, 해당 지원자를 채용 전형에서 제외하고, 합격 후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 취소 및 직권면직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.
- ◆ 채용 청탁 등 부정행위 신고를 위한 ‘청탁금지법 위반신고센터’를 운영하고 있으니 관련 사실은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K-water 예천수도지사장

[첨부1] 가점 인증 국가자격증 분류표 (기술관리)

구분	기능사(5점)	산업기사(10점)	기사(15점)
공통		정수시설 운영 관리사3급	정수시설운영관리사2급, 1급
환경	환경기능사 화학분석기능사	대기환경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	대기환경기사 소음진동기사 수질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토양환경기사 환경측정분석사 화학분석기사 화공기사 환경측정분석사

* 보유한 자격 중 최고 등급 1개만 인정함

[첨부2] 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[별지 제8호] (제6조제5항 관련)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
청구인	성명	수험번호
주 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
반환청구서류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 (서명 또는 인)

한국수자원공사 귀하

공지사항

- 1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2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3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

[첨부3]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

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

-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(기간제 포함), 일자리창출사업 근로 지원자 작성용-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상 비위면직자등은 공
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(제82조)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(제89조, 2년
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해임요구(제83조)를 받게 되므로,
(채용, 공공근로)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<해당되는 문항 □에 체크>

1.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----- ☒ 있음 ☐ 없음 ☐

※ 공직자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
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
· 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
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

2. ‘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’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(다만,
적발 시기는 재직중, 퇴직후 불문)

※ 부패행위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
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
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
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
는 행위
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

※ (예시)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폭행, 단순업무상 과실, 복무위반, 불성실 → 부패행위 비해당
금품요구, 편의수수, 공금횡령, 공용물 사적사용, 수당·여비 부당수령 → 부패행위 해당

3-1.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

3-2. 현재 위 퇴직일(당연퇴직·파면·해임일)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(5년내)
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)

4-1.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

4-2.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(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)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(5년내)

4-3. 권익위법(‘16.3.29. 제14145호로 개정된 것) 시행(‘16.9.30.)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
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, 부칙 제2조)

1, 2, 3-1, 3-2 (모두 충족)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1호) 해당 여부 ----- ☒ 해당 ☐ 비해당 ☐

1, 2, 4-1, 4-2, 4-3 (모두 충족)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2호) 해당 여부 ----- ☒ 해당 ☐ 비해당 ☐

※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(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)

년 월 일
지 원 자 (서명)